

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 심 사 보 고

산업경제위원회
2000. 8. 28.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0년 6월 13일
- 회부일자 : 2000년 6월 13일

다. 상정 일자

○ 제178회 임시회

-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(2000. 8. 28) 상정, 수정동의,
질의답변, 의결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농정국장 김 홍 기)

가. 제안 이유

-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의 제정시행('99. 9. 7)과 관련하여 종전의 “산림환경사업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”가 폐지됨에 따라

- 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하는 임산물 및 임업종자시험·감정 등의 민원을 처리할 규정이 없으므로
- 본 민원처리를 위하여 새로운 제명의 조례로 제정코자 함

나. 주요 골자

- 임업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임업시험·분석·감정 등의 업무중 임업용 종자, 묘목의 시험 및 감정과 토양분석·산림토양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함
-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규정함 (안 제1조)
-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신청 절차를 정함 (안 제2조)
-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서 검토결과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, 시험을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3조)
-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시험성적서를 작성 위탁자에게 통지토록 함 (안 제5조)
- 위탁을 받아 시험한 종자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시험 및 감정의 결과에 대한 불합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불합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7조)

-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산림청장이 고시한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청북도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함 (안 제8조)
-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유혜영)

-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은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에 의뢰하는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
- 상위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
- 안 제7조 제2항의 “이 조례 제2조 제1항의 위탁신청서”는 “규칙에서 정하는 위탁신청서”로 수정해야 하며
- 안 제8조의 “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의 교부 수수료는”을 “시험 및 감정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” 으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“ 생 략 ”

5. 토 론 요 지: “ 생 략 ”

6. 심 사 결 과 : “ 수정 및 가결 ”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 없 음 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 없 음 ”

9. 별 첨

- ◎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 - 충청북도지사제출
- ◎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
- ◎ 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(안)
- ◎ 신·구문 대조표

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(이하“연구소”라 한다)에 의뢰하는 임산물·임업종자 등의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험 및 감정위탁 등) ①연구소에 임산물 및 임업에 관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고자 하는 자(이하 “위탁자”라 한다)는 이 조례 시행규칙(이하 ‘규칙’이라 한다)에서 정하는 위탁신청서에 소정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공시품과 함께 충청북도산림환경연구소장(이하 “연구소장”이라 한다)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시험등의 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은 별표와 같다. 다만, 연구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수량 또는 조사범위를 조정 할 수 있다.

제3조(수탁의 거부) ①시험 및 감정 등 위탁서의 검토결과 시험 및 감정 등 위탁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, 시험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소장은 시험 및 감정 등을 거부 할 수 있다.

②연구소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 및 감정 등의 위탁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위탁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고 제출된 공시품을 반환하여야 한다.

제4조(기구 등의 제공) 연구소장은 시험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자로 하여금 수수료 이외에 시설기계, 기구, 재료, 노무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
제5조(시험성적서) ①연구소장은 임업시험 및 감정을 실시한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시험성적서를 작성하여 이를 위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경우 외에 시험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

규칙에서 정하는 입업시험 및 감정 등에 관한 성적서 교부 신청서를 연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뢰인 이외의 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광고의 기재 등) ①시험성적서의 교부를 받은 자가 당해 성적사항을 광고·게시하거나 인쇄물, 용기, 포장 등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교부된 시험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.
②연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광고·게시, 기타의 기재사항에 대하여 이를 정정 또는 취소하게 할 수 있다.

제7조(공시증자의 봉합) ①연구소장은 위탁을 받아 시험한 증자에 대하여 위탁자로부터 시험 및 감정의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 봉합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그 결과를 봉합해 주어야 한다.

②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제2조 제1항의 위탁신청서에 명기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수료 및 징수방법)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의 교부 수수료는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험·분석·조사·감정수수료에 의해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제9조(수수료의 면제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으로 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.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]

시험구분 및 내용과 공시품의 수량

산림청고시 제1995-21호('95. 9. 28)

시험	시험등의 구분	시험내용 또는 공시품명	수량 또는 조사범위	수수료	
1	임업용종자감정	1.대립종자(잣보다 큰종자)		원	
		○용적중	1,200g	400	
		○순량을	1,200g	700	
		○실중	400g	500	
		○수분	15g	1,000	
		○발아율	150립	6,600	
		2.중립종자(잣과 같은 크기의 종자)			
		○용적중	400g	400	
		○순량을	400g	700	
		○실중	2,000g	500	
		○수분	15g	1,000	
		○발아율	1,250립	6,600	
		3.소립종자(잣보다 작은종자)			
		○용적중	200g	400	
		○순량을	200g	700	
		○실중	4,000g	500	
○수분	10g	1,000			
○발아율	500립	6,600			
4.세립종자(자작종자 크기보다 작은종자)					
○용적중	40g	400			
○순량을	40g	700			
○실중	4,000g	500			
○수분	10g	1,000			
○발아율(향은기 발아)	500립	6,600			
2	묘목감정				

시험	시험등의 구분	시험내용 또는 공시품명	수량 또는 조사범위	수수료
3	토양 분석	1. 토양물리분석 ○ 입도분석 ○ 진비중 ○ 석력함양	토양시료 1kg	원 2,600 1,400 1,000
		2. 토양화 분석 ○ 산도(PH) ○ 전질소 ○ 유효인산 유기물 ○ 양이온 치환용량 ○ 치환성 염기류 ○ 미량원소류	토양시료 1kg	700 2,700 1,000 1,000 800 2,300
4	산림토양조사	정밀산림토양 조사	현지조사 1-10 ha 11-50 ha 51-100 ha 101-200 ha	11,000 12,100 147,200 152,300

관계법령발췌

산림법

제47조(종·묘의 검사 등) 시·도지사는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·묘 생산업자, 마을 또는 학교가 생산하는 산림용 종자 및 산림용 묘목을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산림조합, 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검사결과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하를 금지하거나 소독·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

산림법시행령

제46조(종·묘검사)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·묘의 불량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는 종·묘의 품질과 규격에 관하여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.<개정 99. 8. 6>
 ②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조합·산림조합중앙회 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단체에게 종·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<개정 99. 8. 6>
 1. 검사대상 종·묘가 과다하여 관계공무원만으로 적기검사가 곤란한 경우

임업시험의뢰등에관한규칙 (농림부령 제1310호)

제2조(시험등의 구분 등) ①임업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에 의뢰할 수 있는 시험·분석·조사·감정(이하 “시험”이라 한다), 임목종자의 저장 및 기술지도(이하 “시험등”이라 한다)의 구분과 내용은 산림청장이 정한다.

②임업연구원장(이하 “원장”이라 한다)은 의뢰 받은 시험 등을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거나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 등을 거부할 수 있다. 이 경우 원장은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③원장은 시험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뢰인으로 하여금 시설·기계·기구 또는 재료 등을 제공하게 할 수 있다.

제3조(시험의 의뢰)①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업시험의뢰서에 대상물품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물품의 제출이 곤란한 경우 의뢰인은 현지에서 시험을 실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뢰인은 소정의 수수료 외에 현지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.

③원장은 시험의뢰를 받아 시험한 임목종자에 대하여 의뢰인으로부터 봉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봉합하여야 한다.

제4조(시험결과의 통지 등) ①원장은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의뢰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임업시험성적서(이하 “성적서”라 한다)에 의하여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경우외에 성적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험성적서교부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의뢰인 외의 자는 의뢰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.

제8조(수수료 등) ①제3조제1항,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의 의뢰, 시험성적서의 교부신청 또는 임목종자의 저장의뢰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험, 임목종자의 저장 또는 기술지도를 의뢰하거나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

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동의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00. 8. 28

제출자 : 최영탁 의원

1. 수정이유

- 잘못 표기된 내용을 바로잡고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을 알기 쉽게 하기 위함

2. 주요 골자

- 잘못 표기된 내용 수정

이 조례 제2조 제1항의 위탁신청서 ⇒ 규칙에서 정하는 위탁신청서 (안 제7조 제2항)

- 알기 쉬운 문장으로 수정

- 시험 및 감정등을 위탁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의 교부수수료는 ⇒ 시험 및 감정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(안 제8조)

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

충청북도임업시험및감정등에관한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7조 제2항중 “이 조례 제2조 제1항의”를 “규칙에서 정하는”으로 한다.

안 제8조중 “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의 교부 수수료는”을 “시험 및 감정 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신 · 구 조문 대비표

원 안	수 정 안
<p>제7조 (공시종자의 봉합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시험 및 감정 등의 결과에 대한 봉합이 필요한 경우에는 <u>이 조</u> <u>제 2조 제 1항의</u> 위탁신청서에 명기 하여야 한다.</p>	<p>제7조 (공시종자의 봉합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규칙</u> <u>에서 정하는</u> ----- -----.</p>
<p>제8조 (수수료 및 징수방법) <u>시험</u> <u>및 감정 등을 위탁 또는 시험성적서 사본의 교부 수수료는</u> 산림청장이 고시한 시험·분석·조서 감정수수료에 의해 충청북도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.</p>	<p>제8조 (수수료 및 징수방법) <u>시험</u> <u>및 감정등을 위탁하거나 시험성적서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</u> <u>에는</u> ----- ----- -----.</p>